

# 社內職務發明補償制度 통한

## 技術確立만이 成長約束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施行規則

1973. 5. 17 商工部令 第 384 號  
1977. 2. 17 商工部令 第 503 號

#### 一承 前一

第1條 (目的) 이規則은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以下“令”이라 한다)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發明의 申告) ①令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申告는 公務員이 現在 또는 過去 3年 以內에 그가 맡은 業務와 關聯되어 이룩한 發明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1. 業務와 關聯된 發明申告書

2. 發明의 性質說明書

3. 發明明細書

②前項 第 1號의 業務와 關聯된 發明申告書는 別紙 第 1號 書式에 의한다.

③發明의 性質說明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所屬機關의 業務

發明當時 그가 所屬하고 있는 機關의 業務範圍를 記述하되 특히 當該 發明과 關聯되는 調査, 研究, 試驗 등의 機能有無를 記述한다.

2. 發明者(公務員)의 任務

發明當時 그가 所屬하고 있는 機關에서 當該 發明者가 맡고 있는 職務 및 任務를 記述한다.

#### 3. 發明의 性質

가. 所屬機關의 業務에 屬하는 가의 與否

當該 發明이 그 職務를 途行하게 하는 機關의 業務範圍에 屬하는가의 與否 및 그 事由를 當該 發明과 業務範圍를 聯關지어 記述한다.

나. 公務員任務(職務)에 屬하는지의 與否

#### 4. 職務發明與否

前各號를 綜合한 結果 當該 發明이 所屬機關의 業務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當該 公務員의 任務에 屬한다고 判斷된 때에는 職務發明이라 記述하고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고 判斷된 때에는 自由發明이라고 記述한다.

#### 5. 發明의 實用性

當該 發明의 實用價值, 利用可能度, 產業寄與度 등을 現在

또는 將來를 展望하여 發明者가 把握한 範圍내에서 記述하며 特히 當該發明이 對象製品을 生產, 製造 및 其他 活用時特許權이 利用되는 占有率과 當該 製品名을 詳細히 記述한다.

#### 6. 發明承繼에 關한 意見

當該 發明이 職務發明에 該當하지 아니한다고 判斷한 때 그 發明을 所屬機關에서 承繼할 것을 要望하는지 與否에 對하여 그 意見을 記述한다.

#### 7. 署名捺印

記述人(發明者)이 署名捺印 한다.

④第1項 第 3號의 規定에 의한 發明明細書는 特許法 施行規則 第39條 및 第40條에서 定하는 事項에 準하여 作成한다.

第3條 (機關의 長) ①令 第 6條에서 “機關의 長”이라 함은 當該 公務員이 所屬하는 第 1次官署의 長을 指한다.

다만, 各部處의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

## ■ 企業發展戰略, 그 捷徑 (2)

로 하여금 第2次官署의 長 또는 所屬長官에게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②當該 公務員이 現在 所屬하고 있는 機關과 發明當時 所屬機關이 다를 때에는 發明當時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申告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4條 (假承繼의 決定)** 令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假承繼의 決定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機關의 長이 行한다. 다만, 各部處의 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2次官署의 長 또는 各部處의 長이 令 第7條에 의한 決定을 할 수 있다.

**第5條 (申告前出願)** ①令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令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를 適用한다. 다만, 그 申告에는 令 第10條 第1項但書에 該當하는 事由를 明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境遇에는 令 第7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準用한다.

**第6條 (國家承繼決定의 要請)**

①令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의 國家承繼決定에 관한 要請을 할 때에는 다음 각號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1. 發明承繼要請書
2. 發明明細書
3. 意見書
4. 特許查定書 寫本 또는 特許證寫本
5. 特許查定券 出願書 寫本
6. 特許權 移轉登錄 申請書

②第1項 第1號의 發明承繼要請書는 別紙 第2號 書式에 의한다.

③第1項 第2號의 發明明細書에는 特許查定券 出願書를 基準으로 하여 그 内容을 알기 쉽게 記載한다.

④第1項 第3號의 意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 1. 發明의 性質

職務發明 또는 自由發明에 該當하는 事由를 記載한다.

### 2. 發明의 實用性

發明의 實用價值, 利用處, 產業寄與度 등을 現在 또는 將來를 展望하여 記載한다.

### 3. 登錄補償金

支給받을 登錄補償金을 記載하되 發明이 2人以上 共同으로 한 것인 境遇에는 發明者別權利의 지분을 및 登錄補償金의 지분金額을 記載하고 公務員이 아닌 者와 共同으로 發明한 것인 때에는 共同發明契約書 또는 그 事實을 立證하는 書類를 添附한다.

### 4. 其他

權利에 대한 紛爭이 있거나 紛爭이 起起된 素地가 있는 境遇에는 國家承繼決定에 參考가 될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다.

**第7條 (特許登錄通知)** 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登錄通知는 別紙 第3號 書式에 의한다.

**第8條 (變動事項의 通知)** ①令 第15條 및 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받을 者 및 그가 屬하고 있는 機關의 長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즉시 商工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한 후 當該人の 身上等의 變更事項

2. 令 第21條 第2項에 該當하는 事項

②第1項 第2號의 境遇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別紙 第2號 書式 및 別紙 第3號 書式을 각각 別紙와 같이

한다.

### 第9條 (自由發明의 讓渡申請)

①令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自由發明 또는 이로 因한 特許權을 國家에 讓渡하고자 하는 者는 그가 現在 所屬하고 있는 機關의 長에게 다음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1. 自由發明(特許權) 讓渡申請書

2. 發明明細書

3. 特許證 寫本(特許權일 境遇)

4. 特許權 移轉登錄 申請書

②前項 第1號의 讓渡申請書는 別紙 第4號 書式에 의한다.

③第1項 第2號의 發明明細書에는 第2條 第4項에서 規定하는 事項과 當該 發明의 實用性을 記述한다.

④業務와 關聯된 自由發明을 國家에 讓渡한다는 申請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로서 이를 가름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1973年 1月 1日 以後 이 令 施行當時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發明者 또는 機關의 長 名義로 特許出願한 것 또는 이미 特許登錄된 것은 令 第10條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緊急한 出願으로 보고 同條 第2項을 準用한다.

## 附 則

〈77. 2.17 商工部令 第503號〉

이 規則은 公布後 1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80